

제 541 호

1976.2.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557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배시행규칙중 개정규칙 3

◎ 고 시

제 23 호 :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일부변경및지적승인 11

제 31 호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1

제 33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및지적승인 12

제 34 호 : 도시계획시설 (고가도로) 지적승인 12

◎ 공 고

제 37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 3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39 호 : 환지에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28

제 40 호 :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공고 28

◎ 알 림

제 389 호 (재무부공고) : 76년도시행제 4회 공인감정사

특별 시험시행공고 2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0354

규 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지춘 인

1976. 2. 21

○ 서울특별시규칙제 1557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중 「가사용」을 「시민주거용급수」로 하고, 동조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 1 종, 제 2 종, 제 4 종 및 제 5 종에 대한 급수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호를 삭제하고 제 3 호를 제 2 호로 한다.

1. 육내 급수공사

제 11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를 삭제하고 제 4 호를 제 2 호로 하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의 급수정 장치는 급수탑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받을 지역의 소유대지내에 설치한다 한다.

제 12 조 2 항중 「가사용」을 「시민주거용급수」로 한다

제 13 조 제 4 항중 「3원」을 「5원」으로 한다.

제 16 조 제 1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항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용은 당해수전의 급수업종에 의한다.

② 조례 제 30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 1. 제 4 종
- 2. 제 1 종
- 3. 제 2 종
- 4. 제 5 종
- 5. 제 3 종
- 6. 제 8 종
- 7. 제 6 종
- 8. 제 7 종

제 17 조의 2 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 조의 2 (가산금의면제) 조례제 34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군부대에 대한 급수
- 별표, 별지 제 1 호서식 및 별지 제 2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급 수 중 별 구 분 표
<p>1. 제 1 종</p> <p>다음의 계기한 업태 및 이에 유사한 업태와 월평균 200㎡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급수</p>		
호	업 태	적 요
1	공 연 장	
2	숙 박 업 소	
3	금 용 기 관	보험회사, 신용금고등
4	유흥음식점 및 음식점	특수 음식점 포함
5	다 과 점	
6	유기장, 오락장	보링, 골프, 경구장 포함
7	외 로 기 관	가족병원, 안마시술소포함, 다만 사립대학 부속 병원과 조산원은 제외한다.
8	시장 및 백화점	종합상가, 아케이트, 슈퍼마켓, 인쇄상가 포함
9	이 발 소	
10	메 식 장	
11	수영장, 스케이트 장	
12	세 탁 소	세탁기제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3	인쇄소 출판사	인쇄기제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14	한 증 막	
15	운송 및 관광업	주차장, 창고보관업 포함
16	차량판매정비업소	세차장, 검사장 포함

호	업 체	적 요
17	화재, 식목업	
18	학원, 사설학원강습소	도서관, 체육관 포함
19	촬영장, 사진관	현상인화물 취급하는 디·외점 포함
20	식품제조가공업	
21	도살장, 정육점	
22	양조업, 제빙업	
23	제분업, 제당업	방앗간 포함
24	청량음료 제조업	
25	제약,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포함
26	염색업	염색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27	빌딩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선용 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의 건물
28	도금업	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29	가구류 제조업	가게 가공포함
30	기재소, 목재소	
31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32	요업	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33	합성수지 제조업	
34	피혁 제조업	
35	페인트류 제조업	
36	주유소	
37	연료 제조업	산소, 가스류 포함

2. 제 2 종

다른 급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급수

3. 제 3 종

시단주거용 급수 다만 10세대 이
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아
파트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세
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계
별표 제 2호의 제 3종 요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총량을 사용 세대별로
산출한 평균 사용량의 1㎡미만의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4. 제 4 종

가. 대중탕 이외에 녹탕, 가족탕,
터키탕, 휴게실 사우나(휴게실화
겸용하지 않는것은 제외)의 영
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급수
나. 목조시설을 갖춘 안마시설소에
대한 급수

5. 제 5 종

대중용 욕탕시설만 있는 영업소에
대한 급수

6. 제 6 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포함)
정당, 사회구조단체, 원호단체, 학교,
병영,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
관에 대한 급수

7. 제 7 종

조계 제 4조 제 2호 및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
용급수전에 대한 급수

8. 제 8 종

단기급수용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한 대한 급수

9. 사실소화전

당해 급수시설에 설치된 양수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따로 시설한
소화전

<별지제1호서식>												(전면)																																			
수도요금				고지원부				○○구				수도요금				독 추 장 및				○○구																											
납입필 통지서																																															
주소			동 가 번지			성명			주소			동 가 번지			성명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수전번호		업종		정리번호																																					
번호	납기	급수사용료	용구손로	가산금	기타	번호	납기	급수사용료	용구손로	가산금	기타																																				
합계						합계						합계																																			
송달일자 19						남부마감일 : 19						남부장소 (별표참조)																																			
수령자						위와 같이 독촉합니다.						수입일부인																																			
						19						○○구청장																																			
(고지가관보관용) No												(구청통보용) No												(수납정보관용) No												(수요가영수증) No											

- ⑤ 남부장소:
- ① 농업협동조합
 - ② 조흥은행
 - ③ 상업은행
 - ④ 제일은행
 - ⑤ 한일은행
 - ⑥ 서울은행
 - ⑦ 중소기업은행
 - ⑧ 국민은행
 - ⑨ 외환은행
 - ⑩ 수택은행
 - ⑪ 신탁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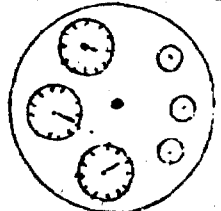
⑤ 강제집행
 기한까지 채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수처분을 단행하게 되며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⑤ 납부시는 본독촉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 도 단 내
1. 수도요금은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채납된 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송제되오니 가옥매매시 채납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독촉장의 채납액중 이의가 있으시면 즉시 구청수도1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

수도요금 영 수 증 ○○구										수도요금 원 부 ○○구											
주소 동 가 번지 호					성명					주소 동 가 번지 호					성명						
수전 번호			업종			정리 번호				수전 번호			업종			정리 번호					
년도	납기	급수사용료	용구손료	가산금	기타	년도	납기	급수사용료	용구손료	가산금	기타										
위 금액 영수합										합계											
한국상업은행 지점										수입일부인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급자											
19										한국상업은행지점											



※계량기는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계량기지침수는 318입니다
※수도사용량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금일지침수 - 전월지침수 = 금일사용량
※계량기 점검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오.

검 정

※ 은행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별지제 2 호서식〉										(전면)																									
수도요금 고지원부 ○○구					수도요금 고지서 및 납입필불지서 ○○구					<p>◎ 납부장소</p> <p>① 농업협동조합 ② 조흥은행 ③ 상업은행 ④ 제일은행 ⑤ 한일은행 ⑥ 서울은행 ⑦ 중소기업은행 ⑧ 국민은행 ⑨ 외환은행 ⑩ 주택은행 ⑪ 신탁은행</p> <p>◎ 가산금</p> <p>납기가 경과되면 다음의 가산금을 붙여 징수합니다. . 납기일경과시 : $\frac{10}{100}$ (1할)</p> <p>◎ 납부서는 본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p>																									
주소·성명 동 번지					주소·성명 동 번지															<p>수 도 안 내</p> <p>1. 수도요금은 은행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수도요금은 관계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p> <p>3. 체납된 수도요금은 현 소유자에게 승계되오니 가옥매매시 체납된 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조정량 19 년도					조정량 19 년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체납금 납부처고</th> </tr> <tr> <th style="width: 50%;">전 수</th> <th style="width: 50%;">금 액</th> </tr>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r> </table> <p>※ 상기금액은 1개월전 현재의 금액입니다.</p>					
체납금 납부처고																																			
전 수	금 액																																		
수전번호					수전번호					<p>송달일자 : 19</p> <p>납부마감일 : 19</p> <p>납부장소 (별표참조)</p> <p>위의 같이 고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p> <p style="text-align: right;">○○구청장</p>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style="width: 50%;">구분</th> <th style="width: 10%;">급수사용료</th> <th style="width: 10%;">용구 손로</th> <th style="width: 10%;">기타</th> <th style="width: 10%;">합계</th> </tr> <tr> <td>납기내</td> <td>원</td> <td>원</td> <td>원</td> <td>원</td> </tr> </table>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납기내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납기내	원	원	원	원																															
납기내 원 원 원 원					납기내 원 원 원 원					<p>(고지기관보관용) No</p> <p>(구청통보용) No</p> <p>(수납점보관용) No</p> <p>(수요가명수증) No</p>																									

(이면)

수도요금		영 수 증		○○구		수도요금		원 부		○○구	
		조정량		19 년도				조정량		19 년도	
수전 번호		입 증		정리 번호		수전 번호		입 증		정리 번호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구분	급수사용료	용구 손로	기타	합계		
납기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 금액 영수함											
은행 지점 조합						은행 지점 조합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수납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수입일부인					
						취급자					
<p><도면생략></p> <p>※ 계량기는 이별게 불니다</p> <p>여기계량기지침수는 318 입니다</p> <p>※ 수도사용량계산은 이별게 합니다</p> <p>금월지침수-전월지침수-금월사용량</p> <p>※ 계량기검침시에는 반드시 입회하여 주십시오</p>											
※ 은행의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3 호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유수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

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대통령령 제 7753 호 (75.8.22) 의 권한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2. .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유수지) 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구로유수지	영등포구 신도림동 460 일대	34,025	
변경	"	"	23,800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31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및 지적 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 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나. 주차장 결정조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2. 20

서울특별시장

위 치	면 적	비 고
강남구 명일동 152-1 및 156-1,3	1,440 ㎡	휴안운수
강남구 삼성동 157-23 및 160-18	1,268 ㎡	중앙교통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끝.

◎ 서울특별시고시제 33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 정 및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정구장) 을 다음과 같이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34 호 (73.11.5)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2. 21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정 구 장	동대문구 망우동 123 의 2 필지	3,944	

◎ 서울특별시고시제 34 호
 도시계획시설 (고가도로)
 지 적 승 인

1. 건설부고시 제 8 호 (76.1.21) 로 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고가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대통령령 제 7753 호 (75.8.22) 호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2. 23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고가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 분	목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16	6,000	용 두 동	세 종 로	용두동축
변 경	16	6,373	용 두 동	세 종 로	연장 청계 고가도로
신 설	15	420	회현동 2 가	회현동 2 가	회현 고가도로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86 호 (62.12.20) 로 고시된 서울여자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기 한다.

1976.2.20

서울특별시 광

토 지 조 서

공 략 개 요

1. 사업장 위치 : 마포구 염리동 148-9 ~ 128-5 (서울여고 진입로)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서울여자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B = 10 m
나. L = 140 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75.12.30 ~ 76.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노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마포구염리동	150-4	대	401	마포구염리동 150	학교법인 송산학원	

◎ 서울특별시공고제 3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8)로
고시된 을지로 4 가-5 가간 도로확장
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
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
하고 토지 및 건물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2.2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 위치: 을지로 4 가로타리-
을지로 5 가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을지로 4 가
- 5 가간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B = 20 → 25^m
30^m
나. L = 830^m
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6.1.5
~ 77.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주교동	125-3			125-3	대	13.5	125	이재경	
2	"	129-2			129-2	"	20.5	예지동 120-2	사상철	
3	"	130-1			130-1	"	8	"	"	
4	"	123-2			123-2	"	5.2	"	국	
5	"	123-5			123-5	"	22.5	용산구이촌동 300-3	이기학	
6	"	123-16			123-16	"	6.1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7	주교동	122-14			122-14	대	1.3	용산구 이촌동 300-3	이기학	
8	"	122-15			122-15	"	0.2	상 농	"	
9	"	122-16			122-16	"	0.1	용계동 334-35 평동 19	김광욱 정덕윤	
10	"	123-26			123-26	"	8.0	"	"	
11	"	123-18			123-18	"	4.4	마포구 동교동 3-61	정덕윤	
12	"	123-24			123-24	"	20.9	122-2	임신학	
13	"	123-25			123-25	"	28.8	광주군 남창면 북원리 346	이은임	
14	"	175-6			175-6	"	20.5	종로4가 215-12	김홍제	
15	"	176-12			176-12	"	5.7	176	김덕순	
16	"	176-12			176-12	"	1.2	종로6가 215-12	김홍제	
17	"	176-14			176-14	"	0.6	176	김덕순	
18	"	176-9			176-9	"	1.8	176	"	
19	"	174-1			174-1	"	15	176	"	
20	"	178-1			178-1	"	17.1	178-1	이종세	
21	"	177-2			177-2	"	7.4	176	김덕순	
22	"	177-3			177-3	"	0.5	177-1	"	
23	"	192-3			192-3	"	19.3	193	이영호	
24	"	189-2			189-2	"	13.5	189	이문우	
37	을지로4가	102-1			102-1	"	30	동대문구 창신동 688-21	남부행덕	
38	"	101-3			101-3	"	14.3	166-2	안옥금	
39	"	101-9			101-9	"	6.2		국	
40	"	101-8			101-8	"	10.6		국	이보상
41	"	101-12			101-12	"	10.9	101-12	김영일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한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42	윤지로4가	101-16			101-16	대	0.5		국	
43		101-7			101-7	"	94.5		김순례	
44		101-10			101-10	"	26.9		국	
45		95-6			95-6	"	0.6	신청 8-4	김천호송	
46		95-4			95-4	"	16.6	95	이용기	
47		95-7			95-7	"	23.4		국	
48		95-11			95-11	"	4.5		국	
49		95-8			95-8	"	11.7	영등포구영등포동 2가33-108	조계동	
50		95-9			95-9	"	17.5	95-4	주종훈	
51		95-10			95-10	"	5		국	
52		95-12			95-12	도	17		서울특별시	
53		119-2			119-2	대	14		국	
54		101-11			101-11	"	2		국	
55	101-12			101-12	"	10.8	101-2	김영임		
56	119-5			119-5	"	172.8	119-3	국찬서		
57	118-11			118-11	"	5.9	118	박태모		
58	118-12			118-12	"	2.4		국		
59	119-4			119-4	"	62.7	119	주식회사 홍영철강소		
60	120-6			120-6	"	19.8	동대문구청랑리동 181	장경화		
61	120-5			120-5	"	14.3	신당동 366-21	한정노		
62	122-5			122-5	"	2.7	신당동 366-41	한정노		
63	120			120	"	2.4	130	김한록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64	율지로4가	123			123	대	2	120	김한목	
65		124-2			124-2	•	1.5	120	•	
66		122-4			122-4	•	16.9	12	김한목	
67		124-1			124-1	•	39.5	신당산24	김익준 외 2인	
68		125-2			125-2	•	31.5	125	삼아화학주	
69		125-3			125-3	•	6.2		경성부	
70		140-4			140-4	•	11.3	대구서성로1가 103	이종갑	
71		140-3			140-3	•	3.7	성동, 사근동 126-64	홍순옥	
72		140-6			140-6	•	3.8	155	이종갑	
73		140-5			140-5	•	12.4	271	국충홍옥	
74		141-2			141-2	•	37.0	부산시 중구 충무로 2가 38	중앙영화주	
75		142-2			142-2	•	3.2	142		
76		148-2			148-2	•	11.5	성북구 돈암동 247-7	김윤수	
77		148-5			148-5	•	5.6	•	•	
78		149-3			149-3	•	8.9	성북구 돈암동 247-7	김윤수	
79		149-1			149-1	•	8.7	150	정수선	
80		150-2			150-2	•	1.1	종로구 사직동 22-85	서승선	
81		156-23			156-23	•	14.9	156-14	박노량	
82		156-22			156-22	•	12.5	156-13	김덕환	
83		156-21			156-21	•	13.0	•	•	
84		156-20			156-20	•	13.0	156		
85		156-19			156-19	•	12.5	156	최경근	
86		156-18			156-18	•	11.3	주교동 293	홍순종	
87		156-17			156-17	•	13.3	156	김민	
88		157-3			157-3	•	5.9	율지로 5가 12-1	도거영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89	율지로4가	157-2	구거		157-2	구거	1.1	율지로5가15-1	경성부	
90	"	187-23	대		187-23	대	0.4	명륜동3가 이보행		
91	"	187-24	"		187-24	"	2		국	비보상
92	"	187-25	"		187-25	"	6			
93	"	187-26	"		187-26	"	8.1	주교동 275	김광수	
94	"	187-27	"		187-27	"	12.6	187-12		
95	"	187-13	"		187-13	"	19.6	187	이영숙	
96	"	187-21	"		187-21	"	12.6			
97	"	187-28	"		187-28	"	2.8		이규인	
98	"	188-4	"		188-4	"	144.2		정춘미	
99	"	188-3	"		188-3	"	56.1			
100	"	188-5	"		188-5	"	1.5			
101	"	188-3	"		188-3	"	3.8			
102	"	202-1	"		202-1	"	42.6	202-1	정춘미	
103	"	202-7	"		202-7	"	29.8		국	
104	"	202-6	"		202-6	"	19.6	동대문구북동 122-96	박상현 윤제환	
105	"	190-2	"		190-2	"	5	금호동1가 154-3	유필운 외	
106	"	191-1	"		191-1	"	11			
107	"	190	"		190	"	12.9	202	김원일	
108	"	200-1	"		200-1	"	7	동대문구북동 122-96	박상현 윤제환	
109	"	199-7	"		199-7	"	0.1	강릉동2가	임갑근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용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10	울지로4가	199-6			199-6	대	13.3	주교동 214	백 문 용	
111	"	200-4			200-4	"	8	202	김 원 일	
112	"	200-5			200-5	"	9	장충동2가200	임 갑 근	
113	"	199-3			199-3	"	19.1	"	임 중 근	
114	"	199-7			199-7	"	0.1	"	심 장 근	
115	"	196-3			196-3	"	0.8	林 町 12	이 해 정	
116	"	196-1			196-1	"	1.5	"	"	
117	"	195-2			195-2	"	5.5	"	"	
118	"	194-4			194-4	"	1.2	길 구 수	김 순 호	
119	울지로5가	1	도		1	도	3		경 성 부	비보상
120	"	2-3	대		2-3	대	17.2	17-1	도 기 영	
121	"	6-6			6-6	"	55.4	애화동 78-1	김 동 수	
122	"	7-5			7-5	"	30.1	7-3	윤 화	
123	"	7-7			7-7	"	28.4	울지로4가296	최 용	
124	"	8-6			8-6	"	16.6	연전동298-6	백 옥 자	
125	"	8-12			8-12	"	12.9	8-1	유 존 락	
126	"	8-15			8-15	"	4.3	8-5	이 재 권	
127	"	8-16			8-16	"	10.0	한강로2가89	강익경외4	
128	"	25-7			25-7	"	0.6	"	"	
129	"	27-2			27-2	도	1		경 성 부	
130	"	27-3			27-3	대	10.8		石 九 橋	
131	"	28-2			28-2	"	39.7	낙원동 196	조선농공주	
132	"	28-6			29-6	도	22.3		서 울 시	

순위	소재지	분할후표시			분할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33	을지로5가	29-4			29-4	도	31.7	충무로4가126	동덕제과(주)	
134	"	29-5			29-5	"	4.2	77-2	한국화물자동차(주)	
135	"	30-3			30-3	"	48.3		서울시	
136	"	30-1			30-1	"	14.7	77-2	한국화물자동차(주)	
137	"	19-66			19-66	"	0.6	77-2	"	
138	"	19-27			19-27	"	4.8	77-2	"	
139	"	20-3			20-3	"	4.4	남대문1가14	조흥은행	
140	"	32-3			32-3	도	12.7		高橋政記	
141	"	35-4			35-4	"	48.3		大野拾蔵	
142	"	37-16			37-16	"	0.6		국	
143	"	37-21			37-21	"	8.0	청파동1가1-55	김귀남	
144	"	37-20			37-20	"	0.7	"	"	
145	에관	12-4			12-4	"	31.6	을지로4가157	김정호	
146	"	10-3			10-3	"	2.7	10	김종호	
147	"	10-6			10-6	"	1		국	
148	"	10-8			10-8	"	13.2	에관동 10	김종호	
149	"	8-2			8-2	"	1.7	6	강고주성	신분
150	"	8-3			8-3	"	1.2	"	"	
151	"	6-3			6-3	"	28.4	6	"	
152	"	3-11			3-11	"	3.4	을지로4가209-1	"	
153	"	6-5			6-5	"	2.8	1.6	"	
154	"	3-6			3-6	"	5.4	"	"	
155	"	3-7			3-7	"	9.6	장충동1가6	박정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56	예 관	3-3			3-3	대	2.7	장충동 1가 6	국	
157	"	3-4			3-4	"	13	6	고강	홍집
158	"	2-2			2-2	"	32.9	2	강 송 만	
159	"	10-9			10-9	"	8.3	10-1	김 정 여	
160	"	9-2			9-2	"	10.6	홍익동 398	안 병 남	
161	"	21-6			21-6	"	6.2	10	"	
162	"	21-8			21-8	"	16.7	회기동 57	이 세 현	
163	"	21-7			21-7	"	11.8	마장동 42	이 재 승	
164	"	21-4			21-4	"	6	충무로4가 6	石 八 九	橋 郎
165	"	21-5			24-15	"	1.5		국	
166	"	22-2			22-2	"	4	大 連 市 初 二 街 農 産 倉 庫	二 星 農 産	
167	"	22-15			22-15	"	26.4	22-2	김화경외2	
168	"	22-19			22-19	"	6.2	"	김 광 자	
169	"	22-16			22-16	"	9.7	22-12	김 성 용	
170	"	22-17			22-17	"	9.0	22-10	강 소	
171	"	22-18			22-18	"	6.5		국	
172	"	22-14			22-14	"	2.9		국	
173	"	39-4			39-4	"	20		秋 老 太 倅	
174	"	39-8			39-8	"	20.9	마장동 269-1	이제한외1	
175	"	39-9			39-9	"	21.0	군자동 184	학 윤 계	
176	"	39-8			39-8	"	1.7		岩 田 虎 吉	
177	"	60-2			60-2	"	5.3	60	김 현 금	
178	"	59-11			59-11	"	1.5	59-1	안 병 덕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재지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79	예관	59-12			59-12	대	15.8	59-1	안병덕	
180	"	59-7			59-7	"	11.2		국	
181	"	59-8			59-8	"	5.6		"	
182	"	59-10			59-10	"	10	흑석동 40-15	이방철외 4	
183	"	59-6			59-6	"	14.3	59-1	박재범	
184	"	67-7			67-7	도	43.9		국	
185	"	59-9			59-9	"	26.9		국	
186	"	67-6			67-6	대	2.4		천하근	
187	"	67-8			67-8	"	26		국	
188	"	59-5			59-5	도	2.8	59-1	안병덕	

0368

전 불 조 서											
토지 소재		원 천								소 유 자	
구	동	지 번	지 목	지 적	임대가격	지 번	지 목	지 적	임대가격	주 소	성 명
중구	주교동	122	전원	6.27	1			11.27		122	고영원
"	"	122-2	전원	5.0	2						
"	"	123-6	전원	27.15	1			108.60		122-2	심유희
"	"	"	전원	54.30	3층이상					"	
"	"	"	전원	37.50	1			130.61		"	임신학
"	"	"	전원	93.11	2층이상					"	
"	"	122-3	전원	54.1	1			149.5		123-3	오덕산
"	"	123-7	전원	95.4	2층이상					"	
"	"	176-2	전원	"	"			143.82		167-3	김문규
"	"	176-3	전원	26.58	1					"	
"	"	176-4	전원	27.86	2					"	
"	"	176-5	전원	89.38	3층이상					"	김순남
"	"	175-1	전원	"	"					"	
"	"	175-4	전원	"	"					"	
"	"	177-1	목조, 외집 평가	6.0	1			6.0			정사윤
"	"	178-1	목조, 외집	12	1			20.0			김동
"	"	"	목조, 외집	8	2						
"	"	192-1	전원	21.6	1			43.2		193	이택호
"	"	"	전원	21.6	2					"	
"	"	186-2	목조 단조	20	1			37		가외동 137	이문우
"	"	189	목조 단조	17	2					"	
"	"	190-1	목조 단조	"	"					"	
"	"	187-1	목조, 외집 평가	8	1			8		산림동 35	정소희
"	윤지 4	104-1	목조 외집	16	1			29		봉모구종신동 175-12	공부전
"	"	"	목조 외집	13	2					"	
"	"	103-1	목조 단조	22.55	1			22.55		상 동	상 동
"	"	"	목조 단조	"	"					"	
"	"	102-1	목조 단조	14	1			14.0			안종신
"	"	"	목조 단조	"	"					"	
"	"	101-12	전원	6	1			6.0		101-12	김영임

제 541 호

서

보

1976. 2. 22

30-23

30-24 보 541호 보 1976. 2. 22

토지소재		원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액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액	주소	성명
중구	율지로 4가	101-5	목조, 외집	10	1			10.0		102	안종선
"	"	101-3	목조개외집	8.9				8.9		정 부	
"	"	95-4	"	12.5 7.5	1 2			20.0			주종훈
"	"	149	목조, 외집	7.6	1			7.6		성북돈암동 247-7	김윤수
"	"	149-1	목조, 외집 평가	14.52	1			14.52		사직동 262-85	서 선
"	"	156-11	목조외연집	12.25 10.0	1 2			22.25		율지로 4가 156	김창도
"	"	156-10	목조합외집	10.0 10.0	1 2			20.0		"	최경근
"	"	156-8	"	30.0 21.0	1 2			51.0		156	김 민
"	"		목조도단조	27.0 10.0	1 2			37.0			
"	율지로 5가	2-1	연 외 조	17 17	1 1			34.0			
"	"	6-2	목조도단조	25	1			25.0		신설동 81-97	신복남
"	"	6-2	"	10	1			10.0			김동수
"	율지로 4가	95-4	목조, 외집	44.72 36.47	1 2이상			81.19		종로구안국동 46	정상철
"	"	"	"	44.72 36.47	1 2			81.19		서대문구 갈현동	김태봉
"	"	"	목조, 도단	18 26	1 2이상			44.0			이용기
"	"	"	목조, 외집 평가	12	1			12			안무면

0369

토지소재		원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주소	성명
광구	울지로 4가	101	목조 와습	46 8	1 2			54.0			김순배
"	"	105	"	18 10	1 2			28		송로구충신동175-12	공무전
"	"	119-2	"	7	1			7		대한민국 (파출소)	
"	"	119-3	"	37 25	1 2			62		울지로 4가 119-3	구찬서
"	"	119-1	"	22 43	1 2			65		119	주식회사 홍영철공사
"	"	120-4 122-3	목조 객익점	10 63	2 1			73			장경화
"	"	120 122 123	"	10 63	1 2			73			김한복
"	"	124	목조도단 평가	10	1			10			황경열
"	"	124	"	24	1			24			김정운
"	"	124	목조양철 집	8.5	1			8.5		성동구신당동산24	유익준
"	"	125	목조도단 조	13.0	1			13.0		송로구예지동 184-1	주일영
"	"	125	목조와습 평가	17.0	1			17.0			손관봉
"	"	140-2	목조와습	8.0	1			8.0		155	이종갑
"	"	141	목조도단 조	27.0	1			27.0			박근화 외 5명
"	"	7	연와조	32 24	1 2 이상			56.0			유경화

제 541 호

지

보

1976. 2. 22

30-25

토지소재		원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지번	지목	지적	임대가격	주소	성명
중구	윤지로 4가	7	목조, 도단	58	1			58			
"	"	8-7 25-6	"	52 9	1 2			61			장봉학
"	"	8-5	목조, 와즙	10.5	1			10.5		8-5	이재원
"	"	24-4 27-1	철근콘크리트 방가옥	8.13	1			8.13		충무로 3가 34-6	김현
"	"	35 37	목조, 도단	34	1			34		37	이재욱
"	"	37-4	철근콘크리트	24 64	1 2			88		청파동 1가 1-55	김귀남
"	"	187-10	목조, 와즙	11.8 9.7	1 2			21.5		산림동 11	조춘식
"	"	187-17	"	15	1 2			23.0		187-17	이규인
"	"	188	목조, 와즙 도단	103 31	1 2			134			
"	"	188, 190 190-1, 191	목조, 와즙	27	1			27			김광일
"	"	190, 191 200-1, 202-1	목조, 도단	58	1			58		합자회사탈골공무점	
"	"	193-2 194-1	연와평가옥	15.75	1			15.75		장충동 2가 200	임충근
"	"	194	목조, 와즙	16 6	1 2			22		193	김순호
"	애관	1-3, 2 24-2	세면부엌 와즙	28.5 30.0	1 2			58.5			강수만
"	"	3-1 6-2	목조, 와즙	21.93 23.43	2 1			45.36			
"	"	3-1, 3-2 3-3, 3-4 6-2	"	13.5	1			59.82		10	

30-26 제 541 호

3

3

1976. 2. 22

0370

토지소재				원				소유자			
구	동	지번	지목	지적	입대가격	시원	지목	지적	입대가격	주소	성명
종구	예관	5-5	목조, 도단	13.5	1			13.5		6	공성훈 강수신
"	"	6-1	목조, 외압	30.50 50.33	2			80.83		예관 6	"
"	"	10-1, 10-3	목조, 도단	31.24	1			55.0		10	김종호
"	"	11	목조, 도단	14	1			14.0		6	고성훈 강수신
"	"	12-1	목조, 외압	20	1			20.0			김성애
"	"	"	"	12.7	1			21.7			박상필 이재승
"	"	22-2	"	74.66	1			140.0		성동마장동 48-5	"
"	"	21-1	목조, 도단	5	5			5			양봉량
"	"	22-9	목조, 외압	10.25 10.00	1			21.25		22-12	김성봉
"	"	39-3	"	20.6	1			26.0		39-3	저이후
"	"	40, 40-1 41	도단조	38.30	1			68		60	김현규
"	"	59-1	목조, 외압	13.5	1			13.5		59-1	안병덕
"	"	67	"	45.5 29.25	1			74.75		67-1	천하식
"	"	59-1	목조, 외압 평가	9.0	1			9.0		(귀속) 25	
"	"	"	목조, 외압	23.0	1			23.0		"	상봉
"	"	"	목조, 외압 평가	9.0	1			9.0		"	"
"	"	39-2	목조, 도단	10.47	1			10.47			김익환
"	"	"	"	21.00	1			21.00			상봉
"	"	39	"	6.0	1			6.0		종로구충신동 18-41	신광순

제 541 호

시

부

1976. 2. 22

30-27

◎ 서울특별시 공고제39 호

환지예정지일부변경지정공고

1.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지구 내 환지예정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삼농공원 확충 계획에 따른 환지계획 변경 사유가 있어, 서울특별시공고 제301호(75.12.23)로 환지계획 변경 공고를 거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로 서면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6. 2. 2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40 호

도시계획내부과지역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내 부과지역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1976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내 부과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관할 전지역

< 관계 조문 발췌 >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3)(경과조치)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조례의 제정, 예산 기채, 예산의 의무 부담에 관한 사항은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기타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진행한다.

<서울특별시새조례>
제82조(부과구역 등의 공고) 시장
은 도시계획서를 부과할 지역을

미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년 3월 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알 림

재무부공고 제 389 호

76년도시행 공인 감정사 특별시험 시행공고
제 4 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1976년도 제 4 회
공인감정사 특별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76 년 2 월 20 일

재 무 부 장 관 김 용 환

<p>1. 응 시 자 격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 및 재무부고시 제 62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74년 9월 5일 자 관보 참조)</p>	<p>3. 응사표 교부 가. 장 소: 응시원서접수처와 동일함. 나. 교부기간: 76년 3월 22일(월)</p>															
<p>2. 응 시 원 서 가. 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구 명동1가4번지 전국은행협회 (구 은행집회소) 나. 교부 및 접수기간: 76년 3월 2일(화) ~ 3월 5일(금)</p>	<p>4. 시 험 가. 시험일시와 과목 및 방법</p> <table border="1"> <tr> <td>월 일</td> <td colspan="2">76년 3월 25일(목)</td> </tr> <tr> <td>시간</td> <td>10시 ~ 10시 50분</td> <td>11시 30분 ~ 13시 30분</td> </tr> <tr> <td>과목</td> <td>민법</td> <td>감정평가 이론</td> </tr> <tr> <td>방법</td> <td>객관식(선답형)</td> <td>주관식</td> </tr> <tr> <td>범 위</td> <td>물권편</td> <td>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및 일반평가 이론</td> </tr> </table>	월 일	76년 3월 25일(목)		시간	10시 ~ 10시 50분	11시 30분 ~ 13시 30분	과목	민법	감정평가 이론	방법	객관식(선답형)	주관식	범 위	물권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및 일반평가 이론
월 일	76년 3월 25일(목)															
시간	10시 ~ 10시 50분	11시 30분 ~ 13시 30분														
과목	민법	감정평가 이론														
방법	객관식(선답형)	주관식														
범 위	물권편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및 일반평가 이론														

월일	76년 3월 26일 (금)	
시간	10시 ~ 10시 50분	11시 30분 ~ 13시 30분
과목	부동산 관계법규	감정평가 실무
방법	객관식 (선박형)	주관식
범위	국유재산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p>나. 시험면제 : 재무부고시 제 623 호에 정한 기관에서 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실무과목을 면제함.</p> <p>다. 시험장소 : 서울특별시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응시표 교부장소에 게시함.</p> <p>5. 재 출 서 류</p> <p>가. 응시원서 1통</p> <p>나. 이력서 1통</p> <p>다. 신원증명서 1통</p> <p>라. 경력증명서 1통 (기관장발행)</p> <p>마. 사진 3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p> <p>바. 응시수수료 : 1,000 원 (응시원서 후면에 정부수입인지 첨부)</p> <p>6. 합격자 발표</p> <p>1976년 4월 23일 이후 서울신문 및 관보에 게재함.</p> <p>7. 기 타 사 항</p> <p>가.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공인감정</p>	<p>사 시험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경력 확인 등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p> <p>나. 시험장내에는 후색 또는 청남색 봉필 및 만년필과 감정평가 실무 시험시 필요한 주관 또는 소형계산기 등 계산기구 이외에는 휴대품을 지참할 수 없음</p> <p>다. 응시자는 응시표 교부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시험개시 30분전에 지정과실에 참석하여야 함.</p> <p>라.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함.</p> <p>마. 감정평가 실무과목의 면제여부는 응시표 교부시에 봉지함.</p> <p>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재무부 이재 2부 (전화 70-4712) 로 문의 바람.</p>
--	---